

# 예산총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61,200,000	16,836,000
일반회계	528,137,388	15,844,122
특별회계	33,062,612	991,878
기타특별회계	33,062,612	991,878
상수도사업	2,747,376	82,421
하수도사업	3,320,701	99,621
수질개선	9,831,927	294,958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66,200	16,986
의료급여기금	730,522	21,916
소득특화사업	6,000,000	180,000
농공단지조성사업	812,420	24,373
공영개발사업	791,520	23,746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12,300	3,369
행복주택사업	5,137,646	154,129
청사건립사업	3,012,000	90,36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사업조서 :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,288,62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